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0년 5월)

2020. 5 / 저작권상담팀(☎ 1800-5455)



(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

- (월간 워드 클라우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 (월간 주요 상담사례) 월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 총 10개)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

순위	저작물 종류별	기타
1	영상	등록
2	폰트	이용
3	사진	유튜브
4	캐릭터	침해
5	이미지	제작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림체' 글꼴로 작성

〈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

○ (영상) 쿡방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요리 레시피를 이용하는 경우 침해에 해당하는가?

-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을 보호하며, 그 안에 포함된 내용 즉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1)]
- 요리 레시피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요리 레시피를 활용하여도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한 요리 사진이나 설명 문구, 영상 등을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폰트) 인쇄용 글꼴(폰트) 파일을 적법하게 구매하여 자료집을 제작하면서 이 중 일부분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저작권법상 글꼴(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며, 글자체(폰트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 글꼴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인 자료집 일부를 이미지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글자체가 사용된 것으로 글꼴(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은 별도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공공기관[2)]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3)]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 **(캐릭터) 유명 캐릭터를 트레이싱하여 SNS 등에 게시할 경우 침해에 해당하는가?**

- 캐릭터를 트레이싱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4]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SNS 등에 게시할 경우 전송[5]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이미지) 타인의 이미지를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비영리적 목적이라고 하여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기타 주요 상담 〉

○ **(등록) 2년 전에 창작한 저작물을 등록하면 창작년월일로 기재한 날짜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는가?**

-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저작물도 등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창작년월일로

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4) 제2조(정의)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제2조(정의)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기재한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6]

○ **(이용) 내 소설 속 캐릭터 이름이 매우 독특한데 누군가 이 캐릭터 이름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아닌가?**

-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 **(유튜브) 유튜브에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이 많은데 저작권 침해 아닌가?**

- 책의 전부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책의 일부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침해)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상업적으로 판매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는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 친고죄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으므로[7],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제작) 사망한 화가의 작품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유족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한다. 저작권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가?**

- 저작권법은 저작권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

6)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7)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나눔바른펜' 글꼴로 작성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20년 5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